

서울시 초미세먼지의 25%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발생원인!

더 맑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
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



▼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



내 자동차는 배출가스 몇등급인지 알아보세요
(<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>)

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



I-SEOUL-U
나의 미래 서울

서울특별시

서울 하늘이
옛날 하늘과 달라
한양도성내
5등급 차량의
진입을 막아 버리



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

2019년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.



! 추진 근거

- ▶ '시장은 자동차 통행량, 온실가스 배출량,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'
「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」 제30조, 시행령 제48조, 시행규칙 제7조
- ▶ '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'
녹색교통지역 지정(국토부 고시 제2017-144호, '17.3.15.)

5 제한 대상

배출가스 5등급 차량(전국대상)

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.6% 감축 예상

- 제외대상
 - 긴급차량, 장애인차량, 국가유공자등생업활동용차량,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, 저공해조치차량 등
- 유예 대상(안)
 - '19. 10. 31.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'20. 6. 30.까지 유예
 -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'20. 12. 31.까지 유예

7 제한 시간

06시~21시 / 상시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포함)

8 제한 지역

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(15개동)

종로구 청운호자동, 사직동, 삼청동, 가회동,
종로 1·2·3·4가동, 종로5·6가동, 이화동, 혜화동
중구 소공동, 회현동, 명동, 필동, 장충동, 광희동, 을지로동

7~ 시행 시기

7월 1일부터 시범 운영,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

-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 시범 운영
(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)
- 과태료 1일 1회 25만원
(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)

• 다산콜센터(02-120)

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생계형 차량 특별 지원

▶ 지원대상

녹색교통지역 거주자,
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 5등급 차량

▶ 지원내용(보조금 상향 등)

- 조기 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(최대 300만원, 2019)
※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 지원
-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약 90% 지원,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차량 100% 지원
※미세먼지 특별법 시행(2019. 2. 15.)으로 저공해조치 대기 수요가 많으니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
[관련문의]

- 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(조기폐차 : 1577-7121 / 저감장치 : 1544-0907)
-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(2133-4414, 3653, 3655)

